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합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공사명	오산세교2 A-5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오산시 권동 326 - 1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건축물() 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옥상층: 506동, 507동, 508동, 509동
중계장치 설치 위치	1.옥상층: 506동, 507동, 508동, 509동 2.지하2층: 헬륨(3개소)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합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분양공고문 또는 분양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겠음.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합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합의사항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 ※ 공사요청일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합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음.

2020년 07월 23일

나라기술단

대표 박우현(인)



기간통신사업자 합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3. 기타 협의사항

1.지상층 이동통신 전파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형 안테나의 추가 설비가 현장협의하에 설비 될 수 있습니다.